

特別消費稅 와 石油



崔 庚仙

(大韓工商會議所·調查部長)

特別消費稅의 目的

特別消費稅는 個別消費稅로서 附加價值稅와 같은 一般消費稅와 대칭되는 概念이다. 個別消費稅는 嗜好品이나 사치품, 高價의 便益品, 趣味, 娛樂用品등을 課稅物品으로 함으로써 產業間의 競爭에 대하여 非中立的인 性格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 대상이 된 產業의 製品값이 租稅가 介入함으로써 產業間의 競爭에 대하여 中立性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소비의 多樣化나 高級化 傾向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高度產業社會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그 같은 경향에 副應하여 과세 대상이나 세율구조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調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이 租稅의 中立性問題는 重要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租稅가 競爭에 대하여 中立性을 유지하지 못할 때 資源分配効果가 차치 잘못하면 歪曲된다는 点에 留意해야 한다.

따라서 연초나 주류같은 기호품을 除外하고는 個別消費稅보다는 一般消費稅의 形態로 転換되는 一般的인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977년에 従來의 雜多한 個別消費稅制를 發止하고 附加價值稅制를 도입한 것도 그러한 國제적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풀이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個別消費稅를 가름하여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值稅를 導入하면서 一部奢侈品에 대하여 別途의 特別消費稅를併課하도록 한 点이 特徵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政府가 내 걸었던 特別消費稅新設의 目的是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附加價值稅의 單一稅率에서 오는 租稅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한편 奢侈性物品등의 消費를 抑制함으로써 稅制面에서 實質的인 租稅負擔의 衡平을 기하고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이 特別消費稅는 34개 과세품목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160% (揮發油의 경우이지만 弹力税率에 의해 현실행은 130%임)에 이르는 9段階 差等税率로 과세 되고 있으며 그 稅收入이 상당히 큰 폭이어서 租稅收入効果面에서도 적지 않은 重要性을 지닌다. 1978年の 特消費稅收入이 3,274億원, 全體國稅收入을 100%로 블 때 11.3%에 이르고 있었으며 79년에는 4,846억원에 12.9%, 그리고 昨年 80年에는 5,825億원으로서 13.1%에 달하고 있다. 附加價值稅의 補完稅라는 目的보다 오히려 稅收目的을 実現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더구나 그 稅收入比重이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보아 当初의 신설목적과는 달리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소비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세수입이 他 稅目的 稅收入보다 相對的으로 커질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말로 크게 소비가 억제되었다면 特消費稅收入은 줄어 들었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경우 特消費稅가 從価稅体制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稅收가 커진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이며 기타 많은 세목이 가격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特消費稅收入의 상대적 증가를

国税收入内譯

(單位 : 10億원, %)

年 度 稅 目	1978		1979		1980	
	金額	構成費	金額	構成費	金額	構成費
所 得 稅	467.8	16.1	614.7	16.3	661.4	14.9
法 人 稅	358.7	12.4	493.2	13.1	485.2	10.9
附加值稅	838.5	28.9	1,088.7	28.9	1,471.2	33.1
特別消費稅	327.4	11.3	484.6	12.9	582.5	13.1
酒 稅	194.0	6.7	265.8	7.0	297.7	6.7
印 紙 稅	24.9	0.9	37.3	1.0	33.9	0.8
其 他	41.2	1.4	53.2	1.4	143.9	3.2
關 稅	646.4	22.3	732.3	19.4	766.1	17.3
國 稅 合 計	2,898.9	100.0	3,769.8	100.0	4,441.9	100.0

資料：'81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물가상승으로만 풀이할 수는 없다.

特消稅의 몇가지 問題点들

特別消費稅는 그 과세대상품목이 지극히 제한적이고部分稅라는 見地에서 볼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고 본다.

첫째 과세물품에 차등세율로 特消稅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산업과 비과세산업사이에서 경쟁의 제한요인이 크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세대상인 毛皮類製造業과 非課稅되는 一般纖維類製造業사이에서 가격경쟁의 제약요인이 발생된다. 또 과세대상인 輕油를 많이 쓰는 產業과 비과세대상인 봉커C油를 많이 쓰는 산업사이에서 봉커C油를 많이 쓰는 산업에게 有利한 경쟁을 가져다 주게 되며 이는 결국 자원배분효과면에서도 크게作用을 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비과세대상 資源의 過度投入과 과세대상 자원의 과소소비를 가져올 우려도 發生해 된다. 또 같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산업과 저율과세되는 산업간에서도 위에서 충당한것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產業間競爭에서 中立的이어야 할 租稅가 이같이 中立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点은 특히 自由資本主義 經濟体制下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과세대상의 선정이나 세율의 책정에 있

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국민의 消費構造가 급격히 변화하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 사치품의 한계를 定하는 일이나 취미 오락용품등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包含시키거나 除外시키는 일 등은 대단히恣意的이며 主觀이 지나치게 많이 作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의 고급화나 다양화등에 相應하여 과세대상이나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세부담의 불균형이 극히深化된다는 점이다. 사실 세율을 몇 %다 몇 %다 하고 결정하는 것도 어떤 公式이 있는 것이 아닌만큼恣意에 따를 수밖에 없다.

끝으로 세율단계도 低率段階에서는 5% 포인트 또는 10% 포인트로 定하고 있는 점, 특소세의 기본목적인 사치품등의 소비억제라는 見地에서 볼때 큰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100%를 超過하는 税率은 關稅에서 輸入禁止와 같이 사실상의 消費禁止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妥當할지도 모른다. 不可避하게 消費해야 할 品目에 대하여 100%를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원배분면에 無理를 가져오게 된다는 点에留意해야 한다. 万若 진짜 사치품에 대해서 100%以上の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그것은 消費가 거의 禁止될 것이기 때문이다. 휘발유를 꼭 써야할 어떤 產業에서 억지로 봉커C油를 쓰게된다면 生產工程에 無理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때문에 제품의 品質이 粗惡해진다거나 어떤 原資材의 浪費要因이 發生된다면 휘발유의 税率를 決定한 사람이 이에대하여 어떤 責任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과세대상의 결정과 그 세율의 결정은 국민경제의 구조와 순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니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責任이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된다.

特消費稅와 石油의 關係는?

휘발유와 경유가 特消費稅의 과세 대상이고 특히 휘발유는 法上 160%, 彈力稅率로 130%의 高率 課稅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相互 關係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特消費稅와 石油 그중에서도 挥發油과의 관계는 역시 과세 대상이고 税率이 가장 높다는 점으로歸結되며 軽油는 낮게나마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또 기타 石油類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관련성을 想定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觀點에서 보면 73年の 第1次 「오일·쇼크」以後 에너지문제가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의 中心課題가 石油에 있다는 점, 항상 우리의 관심거리라고 생각된다. 또 최근에는 世界景氣와 함께 國內景氣가 바닥권을 헤메이고 있는 까닭에 이를 다소나마 浮揚시키기 위해서는 高率로 되어있는 휘발유의 세율을引き下し켜야 한다는 論議가 沸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우리의 注意를 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石油類에 관련된 몇 가지 事項들을 살펴보고 特消費稅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石油類의 油種別 消費実績推移를 보면 年度 別 総 消費趨勢가 계속적인 증가세에 있진 하지만 油種별로는 지극히 变則的이며 불규칙한데다가 늘었다 줄었다 그起伏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벙커C油만은 한해도 그 消費가 안 줄고 계속 늘어났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휘발유이다. 74년과 75년 두해에 걸쳐 그 消費가 상당히 크게 줄었으며 76年 77年 78年 그리고 79년에는 계속 그 소비가 늘었다가 80年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한편 軽油는 76年만 줄고 나머지 해에는 증가폭에起伏이 있을 망정 계속 消費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石油類 全體의 消費를 가지고 論議할것이 아니라 휘발유만 가지고 税率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5. 16이 일어났던 해인 1961年 12月 8日에 法律 第825号로 制定, 分布된 石油類稅法에서는 휘발유의 세율을 30%로하고 있으며 1964년 7월의 개정 석유류세법에서는 이를 갑작기 300%로 올려 놓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에는 이를

石油類稅 課稅物品과 税率의 變遷

法律番号 日字	主 要 内 容	
第825号 61.12.8	1. 挥發油 (航空油除外) 物品價格의 2. 燈 油 " 20% 3. 軽 油 " 20% 4. 重 油 " 10% 5. 其 他 " 10%	30%
第1648号 64.7.8	1. 挥發油 物品價格의 300% 2 ~5 전과同一 但, 64. 12. 31까지는 휘발유에 대해서만 과세(세율 100%)	
第1672号 64.12.31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 2. 燈 油 免稅 3. 軽 油 物品價格의 40% 4. 重 油 " 20% 5. 其 他 " 10%	
第1969号 67.11.29	1. 挥發油 物品價格의 100% 2. 燈 油 " 30% 3. ~4 전과同一 5. 벙커C油 물품가격의 5% 6. 其他 (電氣絶緣油, 潤滑油, 구리스油, 工業用 原料를 除外한 나프타, 솔벤트)	
第1981号 68.3.7	1. 挥發油 物品價格의 200% 2. ~6 전과同一	
第2157号 70.1.1	1. ~4 전과同一 5. 벙커C油 物品價格의 10% 6. 전과同一	
第2682号 74.12.21	1. 挥發油 物品價格의 300% 2. 燈 油 削除 3. ~6 전과同一	
◎ 特別消費稅豆 転換 第2935号 76.12.22	1. 挥發油 物品價格의 160% 2. 軽 油 " 10%	
大統領令 第10080号 80.11.24	◎ 彈力稅率의 適用 第4種 第2類 1. 挥發油 物品價格의 130% 2. 軽 油 " 7%	

資料：財務部

特別企劃：特消稅와 石油

다시 100%로 引下시켰고 67년에는 免稅였던 燈油를 30%의 과세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68년에는 휘발유의 세율을 다시 200%로 올렸고 74년 12월에는 이를 또 300%로 引上시켰다. 한편 74년의 휘발유는 고급에서 31.4%나 소비가 줄고 보통에서 36.9%나 줄어 들었는데 이는 주로 73년의 「오일·쇼크」가 가져온 국내가격의 引上 때문이지, 74년 년말에 오른 세율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75년의 고급 0.7%, 보통 9.2%의 소비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76년에는 높은 세율아래에서도 고급 11.1%, 보통 15.5%의 소비증가가 있었던만큼 세율과 소비억제와의 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76年 12月에 휘발유의 세율이 160%로 떨어지게 되자 77년에는 갑자기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56.0%와 35.8%나 소비가 늘었는데 그것

은 세율의 引下效果와 77년의 国内外景氣 効果가 相乘作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휘발유의 세율이 아무리 낮고 값이 아무리 싸도 경기가 不振하여 工場을 돌릴수가 없다면, 또는 자동차를 굴릴 필요가 없다면 휘발유소비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따라서 휘발유소비량은 휘발유의 稅率과 景氣에 영향을 받지만 세율의 引上에 따른 消費抑制效果보다는 稅率引下에 따른 消費增大效果가 크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80년에 소비가 35.7%와 11.6%나 줄어든 것은 경기부진과 第2次 오일·쇼크가 가져온 余波라고 풀이된다. 80年 11월末까지는 휘발유세율의 变更이 없었고 11월의 改正도 오히려 稅率를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消費가 줄어든 것은 세율과 관계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特消稅는 어떻게 改編해야 하나?

年度別 油種別 消費実績 推移

(單位 : 千배 헌)

	揮發油		燈油	輕油	重油	벙커C油	其 他	合 計
	高級	普 通						
1973	1,792	4,404	2,890	16,428	2,482	52,076	14,593	94,665
	-	-	-	-	-	-	-	-
1974	1,230	2,781	2,202	16,565	2,742	54,662	15,889	96,071
	(△31.4)	(△36.9)	(△26.8)	(0.8)	(10.5)	(5.0)	(8.9)	(1.5)
1975	1,222	2,525	3,340	19,100	2,554	59,122	17,866	105,729
	(△ 0.7)	(△ 9.2)	(51.7)	(15.3)	(△ 6.9)	(8.2)	(12.4)	(10.1)
1976	1,358	2,915	3,666	22,603	2,025	65,975	21,166	119,708
	(11.1)	(15.5)	(9.8)	(△18.3)	(20.7)	(11.6)	(18.5)	(13.2)
1977	2,118	3,958	4,469	28,023	2,874	76,448	25,287	143,177
	(56.0)	(35.8)	(21.9)	(24.0)	(41.9)	(15.9)	(19.5)	(19.6)
1978	2,386	5,132	6,735	34,874	3,000	82,915	29,213	164,255
	(12.7)	(29.7)	(50.7)	(24.5)	(4.4)	(8.5)	(15.5)	(14.7)
1979	2,549	6,084	9,011	37,200	3,681	92,679	34,173	185,377
	(6.8)	(18.5)	(33.8)	(6.7)	(22.7)	(11.8)	(17.0)	(12.9)
1980	1,639	5,380	8,350	37,860	1,843	92,955	35,471	183,498
	(△35.7)	(△11.6)	(△ 7.3)	(1.8)	(△49.9)	(0.3)	(3.8)	(△ 1.0)
1981. 1~9	791	3,623	5,651	27,962	997	68,775	26,248	134,047
	(-)	(-)	(-)	(-)	(-)	(-)	(-)	(-)

註 1) : 輕質重油, 나프타, 세트油, 프로판, 부탄, 溶剤아스팔트 기타 包含.

()안 比前年 增減率(%)

資料 : 大韓石油協會

우리가導出하려는結論은 무엇일까? 特別消費稅制를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石油와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우리의·特消費稅体制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문제점만으로도 特消費稅의 改編理由는充分한 것이며 石油 특히 挥發油와의 관계에서는 그 개정이유의 補強을 받은 것이라고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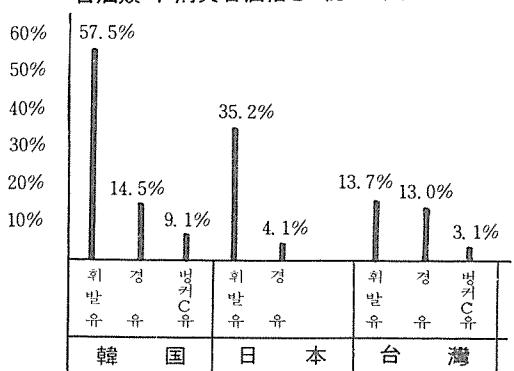
附加價值稅의 補完稅로 出發한 特消費稅인 까닭에 附價值稅制가 完全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特소세는 과세 대상을 점차 줄여 앞에서 강조한 바 特소세의 경쟁제한적요소를 완화 내지 배제하도록 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特消費稅의 存在價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사치스러운 消費行為에 대해서는 그 担稅力만으로도 充分히 고율 과세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 소비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의 조정과 세율구조의 개편이 適

石油類稅率의 國際比較

韓國	日本	台灣
1. 從價稅	1. 從量稅	1. 從價稅
2. 特別消費稅	2. 挥發油稅	2. 石油類物品稅
匯 발 유 : 130%	배럴당 8.553엔	揮發油 : 13.7%
경 유 : 7%	3. 石油去來稅	燈油 : 8.04%
3. 附加價值稅	배럴당 3.863엔	軒油 : 13.03%
모든油類 : 10%		벙커C油 : 3.08%
4. 防衛稅 : C.I.F의 2.5%		

資料：石油協会

石油類의 消費者價格と 稅金의 比重



資料：大韓石油協会

期에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는 세율의 단계를 줄이면서 彈力稅率幅 30%를 拡大하고 이 彈力稅率適用에 과감성이 요구된다. 현행세율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低率課稅되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보다 重課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끝으로 관심의 대상인 汇發유의 세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을 말하기 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石油類稅率을 國제비교한 자료를 볼때 從價稅인 우리의 特消費稅에서 汇發유의 세율이 相對的으로 높은 편인데다가 消費者價格中 稅金이 차지하는 比交面에서 볼때 우리의 汇發유가 57.5% 日本의 汇發유가 35.2%, 그리고 대만의 汇發유가 13.7%로서 우리의 그것이 가장 무겁다는 점이다.

이제 맷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租稅에는 景氣調整機能이 強調되고 있다. 그手段은 彈力稅率에 있다. 彈力稅率의 幅을 현행 30%보다 더 크게 拡大시킬 것을 提案한다. 租稅法律主義라는 立場에서 보면 政府의 載量權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國內外景氣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判斷하고 이에 신속하고 效果있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彈力幅의 許容이 緊要하다는 점에 着眼해야 한다.

일단 탄력폭의 확대를 제도화시킨 다음에는 汇發유와 경유등 과세 대상 석유류의 소비동향을 細分類 用途別로 正確히 把握하여야 한다. 또 우리의 주요국제 경쟁상대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 日本등의 租稅改編動向을 면밀히 分析해야 한다.

그런 然后에 汇發유나 경유의 特消費稅率 變更이 必要하다는 判斷이 서면 이미 下限線에 와 있는 實行稅率의 再調整을 彈力 稅率制에 의해 施行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굳이 彈力稅率에 의해 調整하라고 主張하는 것은 단순한 調整節次의 簡便性때문만은 아니다. 引下 調整과 上向調整의 自由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해 주고자함에도 그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上向調整은 적어도 그것이 立法府의 審議를 거치는데에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느 날엔가는 引上調整의 必要가 높아질公算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